

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
경제대도약 지원

2026

PART 02

세제개편안

공정과세를 위한
조세개혁 추진

+

세제 합리화
· 납세편의 제고



부동산 세제 합리화

비거주 및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세부담 정상화

[양도소득세] 주택 '보유공제'를 '거주공제'로 전환

1세대 1주택자			다주택자 (非조정지역)		
'27년	'28년	'29년~	'27년	'28년	'29년~
거주 4%/연 보유 4%/연	거주 6%/연 보유 2%/연	거주 8%/연	보유 2%/연	거주 2%/연 or 보유 1%/연	거주 2%/연
10년, 최대 80%			15년, 최대 30%	15년, 최대 15% ^{보유} or 30% ^{거주}	15년, 최대 30%
공제한도 없음	20억원	10억원	공제한도 없음	20억원	10억원

[종합부동산세]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조정

구분	현행	개정
거주용 1주택	12억원	14억원[공시가격 14억원(시가 약 20억원)까지는 과세 제외]
비거주 1주택		9억원[공시가격 14억원(시가 약 20억원)까지는 과세 제외]
그 외	9억원	$4\text{억원} + \left[5\text{억원} \times \frac{\text{거주용 주택가액}}{\text{주택가액 합계액}} \right]$ [공시가격 합계 9억원(시가 약 13억원)까지는 과세 제외]



부동산 세제 합리화

장기거주·고령·지방주택에 대한 지원 및 다주택 매도 기회 부여

[양도소득세]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확대

현행

연 250만원



개정안

연 2,500만원 (양도가액 30억원 이하)

[양도소득세] 고령(65세 이상) 1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감면 신설



수도권
5년이상 거주



처분·이주시 '27년 50% (5억원 한도),
'28년 30% (3억원 한도)감면



비수도권

[양도세]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

구분	현행	'27년	'28년	'29년
2주택자	기본세율 ^[6~45%] +20%p	+5%p	+10%p	+20%p
3주택 이상자	기본세율 ^[6~45%] +30%p	+10%p	+15%p	+30%p



기업상속공제 개편 및 사업승계 지원

기업상속공제 대상 및 요건 정비

- 1 기업 정의 신설
‘기업’: 전문기술,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
- 2 적용대상 업종정비
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업종 727개 선정
- 마트, 버스·택시 운송업, 주차장업, 창고업, 병원, 약국 등 제외
- 백년소상공인, 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은 업종 요건 충족 간주
- 3 경영기간 요건
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 현행 10년 → 개정안 30년
기업 해당여부에 대해 민·관 심사위원회가 심사·승인



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

- 매도자** 기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중소·중견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하고 60세 이상 최대주주 → **주식·사업용자산 양도세 20% 감면**
- 매수자** 피승계기업과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자 또는 기업 및 피승계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→ **소득·법인세 10% 감면(5년간)**



비과세·감면 정비

- | | |
|---------------|--|
| 종료 | 장기·관행적 제도 등 실효성 낮은 조세지출은 종료
예)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소세 감면,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VAT 환급 등 |
| 재정지원전환 | 재분배 효과, 지원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전환
예) 출산·입양 세액공제, 혼인세액공제 등 |
| 재설계 | 지원이 필요한 제도는 정책목표에 맞게 재설계
예)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거주 요건 추가,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단일세율 인상, 신용카드 매출액 VAT 세액공제 개선 등 |
| 상시화 | 지속 지원이 필요한 제도는 상시지원
예)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,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|

4 세제 합리화·납세편의 제고

세제 합리화

자기주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

현 행			개 정 안
법인 과세	처분시 양도차익 과세 (자산거래)		과세대상 제외 (자본거래)
주주 과세	소각목적 자사주 취득	법인이 자사주 취득·소각시 의제배당 과세* (자본거래)	법인이 자사주 취득시 의제배당 과세* (자본거래)
	처분목적 자사주 취득	법인이 자사주 취득시 양도차익 과세 (자산거래)	

*거래소에서 자사주 취득시 양도차익 과세



조세탈루 방지 및 납세편의 제고

탈세·재산은닉 등 신고 시 포상금 지급 확대

최대 40억으로 규정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, 포상금의 지급률도 상향

현 행		개 정 안	
추징세액	지급률	추징세액	지급률
5천만원(관세 2천만원)~5억원	20%	3천만원(관세 1천만원)~5억원	30%
5억원 ~ 20억원	15%	5억원 ~ 20억원	20%
20억원 ~ 30억원	10%	20억원 ~	10%
30억원 ~	5%		



재정경제부는

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고,
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며,

국민의 민생 안정과 납세 편의를 높이고,
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세제개혁을
지속 추진하겠습니다.

**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
재정경제부가 함께하겠습니다.**

